

## 기업노조에 무분규 격려금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 복수노조 사업장 개별교섭 콘티넨탈지회 사례

**사건 개요**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이하 '회사')는 2012년 기업노조인 콘티넨탈노동조합과 임단협 타결시 기업노조 조합원들과 모든 사무직 직원들(임원 제외)에게 무분규 격려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하고,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조합원들에게는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회 조합원들은 법원에 균등처우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55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대전지방법원은 2015. 9. 2. 회사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5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복수 노조의 개별교섭 상황 하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하고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 사용자가 복수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 혹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집단적 자치의 일방 당사자(사용자)가 상대방 미쳐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노조들)의 각 의사결정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업노조 조합원들 및 사무직 직원들에게는 무분규 격려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하였으면서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의** 사용자들은 그 동안 노조법상 개별교섭시 사용자의 의무와 제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빌미로, 공공연하게 무분규 격려금을 제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속노조와 조합원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위 판결은 사측의 이런 만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고발프로젝트 2탄!

헬조선의 길목 어귀에서 길을 묻다

노사정 합의문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법안

## 20문 20답



법무법인 에는 인두노동법률원 · 금속노조법률원 · 광진문수노조법률원 · 사무금융노조법률원

자료집은 금속노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쟁의행위 중 현수막과 깃발 설치는 정당

7. C지구 정문 및 통제센터 설치 세부현황\_현수막



## 현대제철지회 현수막 70개, 깃발 3,000개 사례

**사건 개요**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2015년 7월경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직장점거와 함께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와 지원센터 정문 부근과 잔디밭 등에 현수막 70개와 깃발 약 3,0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금속노조 지회가 협력회사와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모욕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현수막과 깃발을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여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를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시설관리권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단결투쟁만이 살길이다!  
 양재동 타격투쟁 각조별로 한번씩!!  
 노동자의 깡다구로!  
 같이 좀 묵고 살자!  
 앓는 소리 좀 작작해라!

**판결 내용** 법원은 헌법이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사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체 쟁의행위 내용 중 일부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전체

쟁의행위를 불법적인 쟁의행위라고 선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실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지회가 설치한 현수막이나 깃발이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제거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기재 내용은 단결투쟁을 촉구하고 회사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는 하나 회사 명예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등 현수막 70개와 깃발 약 3,000개의 설치행위가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의** 사업장에 걸린 현수막 내용과 펄럭이는 깃발이 누군가의 심기를 다소 건드리거나 불편을 준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겠죠.

## 노동개약 저지 광화문 1인 시위



금속법률원에서는 11월 2일부터 2주간 노동법률가단체와 함께 매일 점심, 저녁시간에 맞추어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개약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은 법률원 정준영 변호사.